

# 「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」 “1問 1答”

2017.4.20. 제 정  
2017.6.16. 일부개정  
2018.1.10. 일부개정

## I

### 제도 개요

#### 1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도입한 목적은?

- 규제개혁 건의를 반영하여 종합심사 기간을 완화(3년→5년)하였으나, 대규모(5년치) 추징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로 기업에서 제도보완 요구
    - 일시적·대규모 추징은 기업경영의 존폐여부와 직결되며, 납세자의 지속적인 조세마찰은 관세행정 비용측면에서도 커다란 부담
  - 수입세액 정산제는 1년단위로 납부세액 적정성 여부를 자율점검하고 관세사 검증후 제출하면 조기 세액확정 및 관세조사 면제하는 제도
    - 기업의 조세부담을 조기에 확정하여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, 조세마찰을 최소화함으로써 관세행정 신뢰도 제고가 목적
- ※ 정산제도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아니라 부족한 심사인력을 감안·효율적 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심사 방법 등을 변경하여 시행하는 제도임

#### 2 수입세액 정산제도의 법적근거는 무엇인지?

-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‘관세법 제38조 제3항,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’에 근거를 두는 자율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것임
  - 법 제38조 제3항에 의하면, 일정요건을 갖춘기업은 세관장의 지정을 받아 납세신고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, 심사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
  - 시행령 제32조의2에서는 업체지정, 심사방법, 자료요청, 평가결과 통지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, ‘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’ 제47조에서 AEO업체에 대하여 자율심사토록 규정함

- 이에, AEO 고시에서 심사방법, 관세사 확인 등 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하는 것임 <※법제처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여부 심의완료>

### 3 정산보고서에 대한 '관세사 확인'을 강제하는 이유는?

- 정산보고서 제출업체에 대하여 1년단위 세액확정, 관세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회(국민)·외부 감사기관 등이 납득 가능한 객관성·공정성 확보가 중요
- 정산보고서 당사자인 세관 및 기업뿐만 아니라,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인 검증까지 거친 후에라야 객관성·공정성이 확보됨
- ※ 법인세법, 회계사법도 동일한 취지로 세무사·회계사 검증의무 부여

### 4 非 AEO 기업도 정산신청 가능한지?

-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관세행정 협력도가 높고 자율적 법규준수 기반이 갖춰진 AEO기업 中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
- 한편, 非AEO기업은 AEO 공인을 획득한 후에 신청 가능함
- 한편, 非AEO기업이 법인·기획심사에 따른 추정 등으로 법규준수도가 급락하여 AEO로 진입이 힘들었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개선함
- ① 공인신청 각하 제외, ② 위원회 협의를 통해 '해당 법규준수도 제외후 공인여부' 결정('17.4.1)

### 5 정산보고 대상에 FTA원산지 분야도 포함하는지?

- FTA 원산지 검증분야는 정산보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
- 제도 운영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'장기적 검토' 예정

## II

## 정산 업무절차

### 1 정산업체 지정 및 정산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?

- 매년 1월초 수입세액 정산업체 모집공고(약30일간)하며, 공고 종료 후 정산업체 지정 통보. 단,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 가능  
(※ '17년은 4월초 공고 → 5월초 지정 예정)

- 12월 결산법인 기준, 1년간 정산업무 프로세스는 아래표와 같음

	1월~2월	3월~4월	5월~6월	7월~10월	11월~12월
(세관 AM)	정보분석 (자료요청可)	위험정보 제공	중간점검	정산보고 검토 (처분위 상정포함)	정산결과 통지
(정산업체)	기초자료준비	분야별 검증 및 정산보고서 제출 (관세사 확인포함)		세관확인 대응	결과조치 (보정, 수정등)

(※ 기업상담전문관과 협의하에 일정 조율 가능)

### 1-1 매년 정산업체를 재지정 받아야 하는가?

- 일단 정산업체로 지정받으면, 매년 재지정 받을 필요없이 자격 유지됨
  - 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업체 지정을 해제함
    - ① AEO 특례적용의 정지를 2회이상 받은 경우
    - ② 자료 미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
    - ③ 정산업체가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

### 1-2 정산업무 수행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수 있는가?

(2018.1.10. 추가)

- 일문일답 II-1에서 제시한 정산기간은 보고서 제출(6월말), 정산 결과 통지(12월말) 등 최종 마감일을 예시한 것임
  - 기업상담전문관은 업체별 수입규모·분야별 검증범위·난이도 등을 고려하여, 정산업체와 협의후 정산일정을 단축할 수 있음  
※ 중소기업의 경우, 가능한 짧은 기간안에 위험정보 제공 및 심사완료

## 2 정산보고 대상기간은?

- 정산 대상기간(정산연도)은 기업의 1회계연도와 같으며, 매년 직전 정산연도에 대하여 정산보고함
- '17년도 정산 대상기간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'16.1.1~'16.12.31이며, 3월 결산법인의 경우 '16.4.1~'17.3.31임

### 2-1 최근 종합심사 받은 기업의 정산대상 기간은?

(2018.1.10. 추가)

- 정산 대상기간은 원칙적으로 직전 1회계연도임
- 예를들어, '17.6월 종합심사를 받은 기업(심사대상 : '12.7월~'17.6월)이 정산업체로 지정되는 경우, 종합심사기간과의 중복여부를 불문하고, 18년도 정산대상 기간은 2017.1.1.~2017.12.31.임

## 3 정산업체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은?

- 기본적으로 '수입부문' AEO 공인업체로서,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  - ① 최근 2년이내 특례적용의 정지를 2회이상 받은 업체
  - ② 관세법 등 수출입 관계법령 위반혐의로 조사 진행중인 업체
- ※ 상기요건 외 신청업체의 수입세액 정산보고 수행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정산업체 지정 여부를 관세청에서 결정]

### 3-1 정산업체 선정시 가장 고려하는 기준은?

(2018.1.10. 추가)

- 기본적으로 정산업체 지정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, 기업의 정산수행 의지, 전문성·독립성 있는 관세사 선임 여부 등을 고려함

- 이는, 정산제가 과세관청이 기업의 경영자үүл권을 침해하며 강제로 기업자료를 제출받아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관세조사와는 달리, 기업·세관·관세사 3자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, 기업(관세사)에게 자율검증 권한을 충분히 부여하고, 그 결과를 근거로 세액을 조기 확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임

## 4 지정요건 충족하면, 신청기업은 모두 정산대상이 되는가?

- 지정요건이 충족하더라도 우리청 심사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내에서 정산업체 지정 예정임
- 정산업체 신청수요가 증가하는 경우, 행자부와 협의하여 심사 조직 및 인력 확충 후 정산업체 확대 지정 예정

### 4-1 향후 정산업체 확대 규모는?

(2018.1.10. 추가)

- 심사팀별 정산업체 1개社만 담당 예정이므로, 향후 심사인력 증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 확대 예정
- ※ 18년도는 약30개社 지정 예정 (17년도 10개社 자격유지 + 추가 20개社)

## 5 정산업체가 정산보고서 작성[자체점검]하는 분야는?

- 정산보고서는 정산연도 수출입 신고내역에 대하여 과세가격, 품목 분류(세율), 감면, 환급, 보세공장, 외환분야를 점검하여 작성
- 관세뿐만 아니라 내국세 납부세액 적정성도 포함하며, 보세공장 운영절차·외국환거래법상 절차 준수여부도 자체점검 대상임.
- 다만, 공인기준, 원산지 표시 적정성 및 법 제226조에 따른 통관요건 충족여부 등은 정산보고서 작성 범위에 포함하나, 기업상담 전문관이 위험정보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

## 5-1 정산보고서 작성(자체점검)을 일부 분야만 해도 되는지?

- 정산보고서 작성대상인 과세가격, 품목분류(세율), 감면, 환급, 보세공장, 외환분야 中 일부 분야만 점검·작성할 수는 없음
- 동일 수출입 신고내역에 대하여 분야별 위험요소가 다수 존재하고, 과세가격과 외환, 세율과 환급 등 분야별 검증내용이 상호 영향을 미치므로, 일부 분야의 자체점검을 생략하는 것은 곤란함
- 다만, 수출입 신고내역이 방대하여 정산보고서 작성에 장시간 소요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사전 기업상담전문관과 협의하여 정산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

## 5-2 내국세 분야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?

- 내국세 분야는 세관장이 징수하는 개별소비세, 주세, 교통세, 담배소비세 등의 신고납부세액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임
- 별도 독립된 분야로 구분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, 과세가격 및 품목분류(세율) 분야에 포함하여 작성함

## 6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시로 위험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?

- 기업상담전문관은 과세가격, 품목분류 등 기업의 자율점검 분야에 대하여 위험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바, 위험정보 제공시기 등은 정산업체와 협의하여 결정
- 다만, 정산업체의 충분한 검증기간 확보를 위해 정산보고서 제출만료일 2개월 전까지는 위험정보 제공 필요

## 7 기업상담전문관이 사전 요청하는 자료의 범위는?

- 기업상담전문관은 위험정보 분석 등을 위하여 주요 계약서, 공정 설명서, 기업회계(ERP) 자료 등을 요청 가능
- 「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」 별표1의 ‘기업심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’ 등을 참고할 수 있으며, 자료제출 범위, 제출시기 등은 정산업체와 협의하여 결정

## 8 기업상담전문관의 자료요청 기간을 30일로 제한한 이유는?

- 기업상담전문관이 비정기적·장기간 자료요청에 따른 정산업체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료요청 기간을 제한하는 것임
- 기업상담전문관은 정산업체와 자료요청 시기 및 횟수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되, 전체 요청기간이 총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
- 단, 기업의 사정으로 자료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은 산정에서 제외

### <자료제출 예시>

- 아래와 같이 일정기간 단위로 자료요청 가능(자료요청 기간 총15일 사용)  
(1.5~1.10) 공급계약서, 총계정원장, 거래처별 원장, 무역외 지급내역 정리  
(1.15~1.20) 무역외 지급근거 계약서, 환급프로세스 및 조건표 일체  
(2.5~2.10) 로열티 계약서 및 지급내역, 이전가격 검토자료 일체

## 9 최초연도 정산보고서 작성 대상기간은?

- 정산보고서는 매년 직전 정산연도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, 최초연도에도 직전 1회계연도에 대하여 정산보고서 작성함
- 다만, 동일한 사안으로 수정신고할 내용이 있는 경우 과거분까지 확장하여 자율적 수정신고 가능

## 10 정산업체도 종합심사시 통관적법성 분야를 심사하는가?

- 정산업체의 종합심사는 ‘공인기준’ 만 심사하며, 통관적법성 분야는 ‘정산보고서 제출’로 같음.
- 즉, 5년마다 실시하는 종합심사時에는 AEO 공인기준만 심사하며, 통관적법성 심사를 위한 현장심사는 실시하지 않음
- 한편, 종합심사 대상기간이나, 정산이 未시행된 기간(12년~16년도)의 통관적법성은 기업상담전문관이 위협정보 제공하고, 이에 대한 자율검증으로 처리 가능함

## 11 정산보고서 제출이후 내용 수정이 가능한지?

- 정산보고서 제출이후에도 내용수정은 가능하나, 검토기간 단축 등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정산보고서 제출전에 기업상담전문관과 사전 의견조율을 위한 중간검토 회의를 충분히 갖는 것이 필요
- 중간검토 회의를 통해 과세근거·정산내용 등에 대한 상호 이견을 충분히 협의하여 정산보고서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

## 12 정산업체와 이견이 있는 쟁점에 대한 처리방법은?

- 정산업체와 이견이 있는 쟁점의 경우, 기업상담전문관은 정산결과 통보시 해당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통지
  - 특히, 수입신고번호, 해외공급자명, 사실관계, 쟁점사항, 세관의견, 향후 진행사항 등을 명확히 명시
- 정산결과 통지이후 1년의 범위내에서 숙려기간 및 변론권을 정산업체에 보장하고, 과세논리 및 근거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 필요
  - 1년여간 조정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심사 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분방향 결정

## 12-1 업체와 이견이 없는 사안도 처분위 상정하여야 하는지 ?

(2018.1.10. 추가)

- 정산결과 기업과의 이견 有無를 불문하고, 전체 사안에 대하여 심사처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함
- 이는, 정산제가 기업·관세사·세관 3자간의 심사를 거치므로 검증 내용의 객관성은 확보되나, 결과적으로 심사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통해 최종적인 정산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임

## 13 정산보고 결과, 과부족 세액에 대한 처리 절차는?

- 정산보고 결과로 과부족세액이 확정되는 경우, 통관지 세관 납세 심사부서에 보정·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진행
-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서에 사안별 검토결과, 해당 수입신고내역, 과부족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고, 정산업체를 이를 근거로 보정·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

## 13-1 정산결과 행정처리와 관세조사와의 차이점은?

(2018.1.10. 추가)

- 정산이후 행정처리는 납세자 스스로 보정·수정신고 등이 가능하므로, 가산세 감경이 가능하고,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됨
- 그러나, 관세조사는 세관장이 경정처분을 하므로, 가산세는 감경되지 않으며,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未발행될 수 있음

### <정산제와 관세조사 비교>

구 분	정산업체	관세조사(종합심사 포함)
가산세	기간별 10~20%감경 (부족세액의 8~9%부과)	未감경 (부족세액의 10% 부과)
수정세금계산서	발행	未발행

\* (근거)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3호,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

## 14 조치가 완료된 정산연도에 대하여 관세조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?

- 정산보고 결과 조치가 완료된 정산연도는 ‘신뢰보호의 원칙’에 따라 동일한 사안으로 추가적인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임
  - 다시 말해, 세관·기업·관세사의 3자간이 상호 이해관계 충돌없이 충분히 검증하여 제출하는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기업이 ‘신의 성실 원칙’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보호하겠다는 뜻임
  - 다만,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할 수 있음
    - ① 허위·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
    - ② 자료 미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
    - ③ 기업상담전문관이 정산결과 통보시 ‘추가검토·질의·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결과통지한 경우

### 14-1 정산 확정이후, 동일사안에 대한 처분변경이 가능한지?

(2018.1.10. 추가)

- 정산확정이 완료된 기간에 대하여 동일쟁점에 대한 세관의 처분 변경은 불가하며, 정산이후 기간부터 새로운 처분 가능함
  - 이는, ‘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안으로 추가적인 심사를 하지 않겠다’는 심사정책의 운영방향을 표명하는 것이며,
  - 따라서, 동일사안에 대하여 새로운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, 기업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산이후 기간부터 가능함

## 15 정산업체는 매년 정기 자체평가서도 작성하는가?

- 정산업체로 지정되는 경우, 정기 자체평가서 면제함
  - 수입부문 뿐만아니라 수출·물류부문의 자체평가서도 면제함.  
다만, 필요시 기업상담전문관이 공인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위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

## 16 자체평가 면제시, 공인기준 관리가 소홀해지는건 아닌지?

- 수출입지원센터의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해 법규준수도 등 공인기준 충족여부 수시 점검 및 종합심사를 통해 관리 가능
- 정산업체는 종합심사시 공인기준을 충족하여야 갱신 가능하므로 공인기준별 특성에 따라 정기적 자체관리 필요
  - 예를들어, 거래업체 관리·운송수단 관리 등 주기적인 점검 및 기록·유지가 필요한 공인기준의 경우, 종합심사 과정에서 그 실행여부를 심사하므로, 정산업체는 주기적인 점검 등 관리 필요

## 17 정산업체와 非정산업체의 업무절차 차이점은?

	정산제도 未활용	정산제도 활용
제출서류	정기 자체평가서	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
대상업체	AEO 공인업체 전체 (수입업체 134개)	AEO 수입업체 中 희망기업 ( '17년 20개 예상)
평가주기	매년	매년
심사분야	4대 부문, 71개 분야	6대 부문, 37개 분야
프로세스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: 0 auto;">AEO 공인</div> <p>↓ (매년)</p> 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red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: 0 auto;">자체평가서 제출</div> <p style="font-size: small;">* 공인기준 검증</p> <p>↓ (5년후)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: 0 auto;">종합심사</div> <p style="font-size: small;">* 세액위주 심사 ⇒ 일시적 변론권</p> </div>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: 0 auto;">AEO 공인</div> <p>↓ (매년)</p> 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red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: 0 auto;">정산보고서 제출</div> <p style="font-size: small;">* 세액 年단위 정산 ⇒ 1년간 변론권 보장</p> <p>↓ (5년후)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: 0 auto;">종합심사</div> <p style="font-size: small;">* 공인기준 검증</p> </div>

- 정산업체는 허위자료 제출 등 특정사안을 제외하고 관세조사 면제 하나, 非정산업체는 기업상담전문관이 제공한 위험정보에 대하여 미조치·불성실 조치하는 경우 기획심사 전환함(※종합심사 훈령 제49조 제4항)

## 17-1 정산업체와 非정산업체의 AM위험정보에 있어 차이점은?

(2018.1.10. 추가)

- 관세청에서는 모든 AEO기업에 대하여 기업상담관(AM)을 지정하고, 기업의 수출입 오류사항 안내 등 관세행정상 전반을 지원하고 있음
- AM 위험정보에 있어, 非정산업체에는 세관이 보유한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제공되며, 그 결과에 대하여 **확정력이 부여되지 않는데** 반해,
- 정산업체의 경우, 사전 기업자료 요청을 통해 정밀한 분석을 통해 위험정보를 제공하며, 그 정산결과에 대하여 **확정력을 부여**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임

## 18 정산보고서 제출의 효과는?

-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관이 정산결과 통보서에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기술한 사안을 제외하고 **모두 확정함**
- 이는 조세부담 조기 확정을 통해 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, 부족한 세관인력을 고위험군에 집중하기 위한 정산제 취지에 따른 것임
- 다만, 기업이 ① 허위자료 제출하거나, ② 세관의 합리적 의심\*에 따른 자료요구에 불응하는 경우, ③ 정산 심사기간 제약\*\*으로 검토하지 못하였음을 정산결과 통보서에 **명확하게 기록한 사안**은 확정되지 아니함
- \* (합리적 의심) 과세가격 누락 등 구체적인 착안사항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근거, 사유, 필요서류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자료 요구하여야 함
- \*\* (심사기간 제약) 구체적인 위험요소 및 착안사항이 있으나 정산일정상 심사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, 단순히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검토시간이 부족한 경우까지를 말하는 것은 아님

### III

## 관세사 선임 및 평가

### 1 정산보고 확인업무에 「신고인 관세사」를 배제하는 이유는?

- 1년단위로 수입세액을 확정하고 관세조사를 면제하는 정산제도는 검증 관세사의 ①공정성 ②객관성 ③독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
  - 특히, ③독립성은 관세사의 공적 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, 자신이 수출입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세액오류 사항 등을 적발하여 소신있는 검증의견 표명을 기대하기는 현실적 한계
  - 「공인회계사법」에서도 기업과 감사인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, 재무제표 회계감사인(확인관세사와 유사)은 해당회사의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, 내부감사업무 대행 등의 업무 수행을 금지함
  - 따라서, 납세의무자인 정산업체와 독립적 관계에서 이해관계 충돌없이 정산보고서 검증업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고인 관세사를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

### 2

### 신고인 관세사와 동일 법인소속 관세사가 검증하는 경우, 정산보고서의 공정성·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지 않은가?

- 입안예고 과정에서 질의내용과 같은 우려가 다수 제기되어, 신고인 관세사와 동일 법인소속 관세사의 선임을 전체 선임관세사의 50% 이내로 제한하기로 결정 (※ 관세청 '정책현안 조정회의', '17.2월)
- 예를 들어, 정산업체가 확인관세사를 5명 선임하는 경우, 수출입 통관법인 소속 관세사는 2명 이내로 선임하여야 함

### 3 관세사 평가기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?

(2018.1.10. 개정)

- 관세사 평가는 원칙적으로 기업상담전문관의 '정성적 판단'을 기준으로 하며, 주요 평가내용 및 절차는 아래와 같음
  - (평가내용) 정산 수행과정에서의 ①확인업무 충실성, ②업무분야 전문성, ③기업과의 독립성, ④관세행정 협력도를 정성적 평가
  - (점수산정) 4개분야, 10개 질문에 대하여 '5점 척도' 방식 산정

<평가분야별 점수 배점>

지표명	①확인업무 충실성	②업무분야 전문성	③기업과의 독립성	④관세행정 협력도
질문數(배점)	4개(40점)	2개(20점)	2개(20점)	2개(20점)

- (평가절차) 기업상담전문관이 정산업체 관세사별 평가점수 부여 → 심사처분심의위원회 심의(세관) → 평가결과 관세청 보고 → 확인관세사 평가위원회 심의(청) → 최종 결과관리

### 4 관세사 확인업무 제한은 어떻게 하는지?

- 확인업무 제한대상 관세사는 다음과 같으며, 제한기간은 2년 내로 함
  - ① 시장질서 문란행위 관세사
  - ② 기업의 영업비밀 누설 등 보안준수 의무위반 관세사
  - ③ 평가점수가 현저히 낮은 관세사
  - ④ 기타 사유로 관세사 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관세사

### 5 기업과 관세사간 담합 또는 관세사의 불성실한 검증에 대한 대처방안은?

- 정산업체가 성실납세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①정산업체 지정해제, ②정산보고서 인수거절, ③정산연도 세액확정 배제
  - 관세사의 경우에는 정산보고 확인업무를 2년간 제한

## 6 통관법인 소속 관세사를 50% 이하로 선임 제한하는 기준은?

- 통관법인 소속 관세사를 50%로 제한한다는 의미는 정산업체별 전체 선임관세사 ‘인원수’를 기준으로 제한한다는 의미임.
- 다시말하면, 확인 관세사를 6인 선임하는 경우, 통관법인 소속 관세사는 3인만 선임 가능하다는 의미이며, 검증분야 또는 업무량까지 50%로 제한하는 의미는 아님
- 다만, 정산업체는 관세사별 검증분야 및 업무량 배분에 있어, 수입세액 정산제도 취지에 맞게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관세사가 해당 분야 확인 관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

## 7 사업장별 통관관세사가 다른 경우, 상호 교차해서 선임해도 되는가?

- 정산보고서 확인 관세사는 수입신고 건별로 선임할 수는 없으며, 과세가격·품목분류·외환 등 분야별 전문 관세사를 선임하여야 함
- 사업장별 통관 관세사를 상호 교차 검증하는 경우, 수입신고 건별 확인 관세사가 상이하다는 의미이므로 이는 현실적으로 곤란함

## 8 정산업체 지정신청 이후에 관세사 선임신고서를 제출해도 되는지?

(2018.1.10. 개정)

- 분야별 전문 관세사 선임여부가 정산업체 지정시 고려가 되므로 정산업체 신청시 관세사 선임신고서도 제출하여야 함
- 다만, 정산업체 지정이후 관세사 선임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‘확인관세사 변경신고서’를 기업상담관에게 제출하여야 함